

# 전략·ESG위원회 규정

2024년 7월 9일





## 차 례

- 제 1조 (목적)
- 제 2조 (기능)
- 제 3조 (구성)
- 제 4조 (위원장)
- 제 5조 (소집)
- 제 6조 (의결방법)
- 제 7조 (사전심의 사항)
- 제 8조 (토의 사항)
- 제 9조 (자료제출 요구권 등)
- 제10조 (간사조직)
- 제11조 (의사록)
- 제12조 (규정의 개정)

附 則

# 전략·ESG위원회 규정

## 제1조 (목적)

- ① 이 규정은 전략ESG위원회(전략·Environmental, Social and Governance위원회, 이하 “위원회”)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-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2조 (기능)

위원회는 이사회 중심 경영원칙에 따라 회사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관한 사전심의기구로서, 회사의 전략 및 환경(Environment) · 사회적 가치(Social Value) · 회사의 지배구조(Corporate Governance)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검토·분석하여,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.

## 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 및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)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## 제4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전심의 또는 토의한 사항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당해 위원 선임을 위한 회의는 연장자인 위원이 주재한다.

## 제5조 (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시,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신,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④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제3항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### 제6조 (의결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
-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# 제7조 (사전심의 사항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전략 및 경영계획 관련 사항을 이사회 부의에 앞서 사전에 심의한다.
  1. 회사의 중장기 전략
  2. 회사의 경영계획
  3. <삭제> (2023. 3. 29 부)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투자 및 기획관리 관련 사항을 이사회 부의에 앞서 사전에 심의한다.
  1.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.5%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 또는 기존사업 철수(전년도 매출액 기준)
  2.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.5%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(취득가액 기준. 단, 취득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.5%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이라도 처분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.5%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포함)의 고정자산 취득 또는 처분

3.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.5%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(취득가액 기준. 단, 취득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.5%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이라도 처분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.5%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포함)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. 단, 자금 운용 관련 투자차원의 유가증권 취득은 제외한다.
  4. 회사의 해산, 합병
  5.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.5%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(양수도금액 기준)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회계 및 재무관리 관련 사항을 이사회 부의에 앞서 사전에 심의한다.
1. 신주의 발행
  2. 사채의 발행
  3. 자본의 감소
  4.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.5%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
  5.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5%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의 차입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내부거래 관련 사항을 이사회 부의에 앞서 사전에 심의한다.
1.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자금, 유가증권, 자산, 상품,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사회 의결 사항(주요 내용의 변경 포함)
  2. 최대주주(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이사회 승인 사항
- ⑤ 위원회는 기타 이사회 부의사항 중 회사의 전략, 평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사항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다.

#### 제8조 (토의 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할 수 있다.

1. 회사 및 그 자손회사의 주요 경영 전략에 관한 사항
2. 회사의 산업별 사업 추진 전략
3. ESG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사항
4. ESG 실행 및 성과에 관한 사항

5. 기타 회사의 전략, 평가, 주주가치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사항 또는 ESG 관련 사항

#### 제9조 (자료제출 요구권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에게 위원회 출석, 관련자료의 제출 및/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#### 제10조 (간사조직)

- ① 위원회의 간사조직은 기획재무실 전략팀으로 하며, 간사는 기획재무실장이 담당한다.
- ② 간사조직은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, 각 위원을 보좌하고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.
- ③ 간사조직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속경영실 SV추진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#### 제11조 (의사록)

- ① 간사조직은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- ② 간사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은 이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# 제12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# 附 則

1. 이 규정은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23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4. 이 규정은 2024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24년 7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